

수신자	광진구청 도로과
제목	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
<p>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귀하께서 소유(관리)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오니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하얏음을 고시합니다.</p>	

대상 시설물		지정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지정일시
시설물 명칭	소재지			
광장중앙 지하차도	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(광장동)	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미터 미만의 지하차도	<p>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점검 실시</p> <p>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.</p> <p>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2019-02-14

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의 장